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853 / 전속 773-4181

문서번호 하행58452-1310

시행일자 '93. 7.

(경유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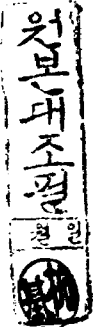


취급		시	장
보존		3	1
부시장	공익	기획관리실장	
국장	공익	법무담당관 심사팀	
과장	공익		
기안	나종용	협조	

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

하수도사용업종을 급수업종에 맞추고 하수도사용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첨부 : 1.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1부  
2. 신.구조문 대비표1부. 끝.



제출일자	1993. 9. 9	제출번호	000000
제출자	서울특별시	제출처	서울특별시
부서		부서	

##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3년 월 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하수처리장건설 부족재원을 확충하고 하수도 사용업종을 급수업종에 맞추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을 조정코자함.

### 2. 주요골자

- 하수도사용료요율표 (안 별표1중 가)
  - 사용료요율 10%인상
- 하수도사용업종 구분표 (안 별표1중 나)
  - ┌ 종전(6종) : 일반1종.2종.3종, 공공용, 공중용, 산업용
  - └ 변경(8종) : 가정용, 영업1종.2종, 육탕1종.2종, 공공용, 공중용, 산업용

원본대조필  
1월 일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하수도법 제2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생략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 별표 1 > 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,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는 1994년 1월  
검침분부터 적용한다.



< 별표1 >

가. 하수도사용료 요율표

구분 업종	1개월 기본요금		초과 사용료	
	기본수량(㎡)	기본요금(원)	사용구분(㎡)	1㎡당단가(원)
가정용	15	330	16 - 30 31이상	40 110
영업용 1종	15	330	16 - 30 31 - 50 51이상	40 110 220
영업용 2종	15	330	16 - 30 31 - 50 51 - 100 101 - 500 501이상	40 110 220 330 390
욕탕용 2종	500	253,000	501이상	880
욕탕용 1종	사용수량	1㎡당 80 원		
공공용	사용수량	1㎡당 80 원	시정	
공중용	사용수량	1㎡당 27 원		
산업용	사용수량	1㎡당 75 원		

원본(대조필)  
정밀

수  
심사필

나. 하수도사용업종 구분표

업종	구분내용
가정용	·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사용자
영업용 1종	·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영업용1종 해당업종 사용자
영업용 2종	·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영업용2종 해당업종 사용자 (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, 발전소, 두채재배업소는 제외한다) · 가족탕, 한증탕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
욕탕용 1종	·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1종 해당업종 사용자
욕탕용 2종	·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2종 해당업종 사용자 (가족탕, 한증탕 제외)
공공용	·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사용자 (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, 경로당, 탁아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사용자는 제외한다)
공중용	·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, 경로당, 탁아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
산업용	·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· 발전소 · 두채재배업소

원본대조필

부  
심사필

\* 사용수 :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(하천유수를 포함하며 산업용은 공업용수로 쓰여지는 하천유수를 포함한다)

원본대조필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<별표1>  
가. 하수도사용료 요율표

현행					개정안							
구분	1개월 기본요금		초과 사용료		구분	1개월 기본요금		초과 사용료				
	기본수량 (m <sup>3</sup> )	기본요금 (원)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)	1m <sup>3</sup> 당 단가(원)		기본수량 (m <sup>3</sup> )	기본요금 (원)	사용구분 (m <sup>3</sup> )	1m <sup>3</sup> 당 단가(원)			
일반 1종	15	300	16-30	36	가정용	15	330	16-30	40			
			31-50	100				31이상	110			
			51-100	200				영업용 1종	15	330	16-30	40
			101-500	300							31-50	110
			501이상	350							51이상	220
일반 2종	15	300	16-30	36	영업용 2종	15	330	16- 30	40			
			31-50	100				31- 50	110			
			51이상	180				51-100	220			
일반 3종	500	230,000	501이상	800	육탕용 2종	500	253,000	501이상	890			
공공용	사용수량1m <sup>3</sup> 당 73원				육탕용 1종	사용수량 1m <sup>3</sup> 당 80 원						
공중용	사용수량1m <sup>3</sup> 당 24원		시정		공공용	사용수량 1m <sup>3</sup> 당 80 원						
산업용	사용수량1m <sup>3</sup> 당 68원				공중용	사용수량 1m <sup>3</sup> 당 27 원						
					산업용	사용수량 1m <sup>3</sup> 당 75 원						

\* 일시사용 : 사용량 1m<sup>3</sup>당 200원

부  
사  
실  
11-6

나. 하수도사용업종 구분표

현행		개정안	
업종	구분내용	업종	구분내용
일반용	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1종 (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, 발전소,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,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, 체육시설, 제3종 및 제4종 (안마시설소) 해당업종 사용자</p>	<p>가정용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사용자</p>	
	<p>다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사용자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4종 (안마시설소 제외) 해당업종 사용자</p>	<p>영업용 1종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영업용 1종 해당업종 사용자</p>	
공공용	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5종 및 제6종 해당업종 사용자,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,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비영리수영장, 교회, 사찰</p>	<p>영업용 2종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영업용 2종 해당업종 사용자 (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, 발전소, 두채재배업소는 제외한다)</p> <p>가족탕, 한증탕 (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)</p>	
	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7종 해당업종 사용자,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, 경로당, 탁아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</p>	<p>욕탕용 1종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1종 해당업종 사용자</p>	
산업용	<p>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p> <p>발전소</p> <p>두채재배업소</p>	<p>욕탕용 2종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2종 해당업종 사용자 (가족탕, 한증탕 제외)</p>	
	<p>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</p> <p>발전소</p> <p>두채재배업소</p>	<p>공공용</p> <p>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사용자 (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, 경로당, 탁아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 제외한다)</p>	

\* 사용수 :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(하천유수를 포함하며, 산업용은 공업용수로 쓰여지는 하천유수를 포함한다)

\* 사용수 :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(하천유수를 포함하며, 산업용은 공업용수로 쓰여지는 하천유수를 포함한다)